

#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10. 26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.10.14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6.10.17.
- 다. 상정일자 : 제20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6.10.26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

### 가. 폐지사유

- 1) 상위법 개정시 관련조항 삭제됨에따라 별도의 조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 없음
- 2) 2002.11.1 제정된 본 조례에 따라 편의시설촉진기금의 재원은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,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,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된 사항이 없고, 예

산문제로 일반회계 출연도 하지 않으며 장기간 운용되지 않고 있기에  
폐지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」를 폐지함

### 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- 2002년11월1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 법률인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의 설치)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